##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998

발의연월일: 2025. 2. 7.

발 의 자: 강선우·서미화·김 윤

김윤덕 · 소병훈 · 홍기원

김교흥 • 박해철 • 진성준

김한규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구호의 종류로 심리회복 지원을 두고 있으며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, 시·도에 시·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각각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심 리회복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·조정하고 있으며, 그 밑으로 국가트라 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체계와 대한적십자사가 주로 활동하는 재난회복지원센터 중심의 행정안전부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 음.

그러나, 심리회복지원업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국가트라우마센 터 및 각 시·도와 시·군·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성 이 보다 있으며,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.

이에 보건복지부에 중앙심리회복지원단을 두고 중앙심리회복지원단 장은 효과적인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2). 법률 제 호

###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1항 중 "행정안전부에"를 "보건복지부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행정안전부장관이"를 "보건복지부장관이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중앙심리지원단장은 효과적인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「정신건 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2의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 등을 포함 한 통합심리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⑦ 행정안전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충분한 심리회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1. 행정안전부장관: 재난 구조·복구·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 한 관계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등
- 2. 보건복지부장관: 재난피해자 및 그 유가족(희생자 유가족을 포함한다)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8조의2(중앙 및 시·도재난심 제8조의2(중앙 및 시·도재난심 리회복지원단 설치 등) ① 리회복지원단 설치 등) ① ---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 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 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 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<u>행정안전부</u> -----보거복지부 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(이 하 "중앙심리지원단"이라 한다) 을, 시·도에 시·도재난심리회 복지원단(이하 "시·도심리지 원단"이라 한다)을 각각 둘 수 있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③ 중앙심리지원단은 관계부처 공무원, 유관기관 임직원,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, 단장 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. --보건복지부장관이-----. <신 설> ④ 중앙심리지원단장은 효과적 인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④ · ⑤ (생 략)

<신 설>

⑥ (생략)

- 률」 제15조의2의 국가트라우 마센터를 중심으로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 등을 포함한 통합심리지원팀을 구성하여 운 영할 수 있다.
- <u>⑤</u>· <u>⑥</u> (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)
-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보건복지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게 충분한 심리회복지원이 이 루어지도록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1. 행정안전부장관: 재난 구조 ·복구·치료 등 현장대응업 무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등
- 2. 보건복지부장관: 재난피해자 및 그 유가족(희생자 유가족 을 포함한다)
- <u>⑧</u> (현행 제6항과 같음)